



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

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.

1. 건강상담,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, 추적검사, 작업환경 개선 등 (★ 근로자건강센터 활용)
2. 근로제한 및 금지, 작업전환, 근로시간 단축, 직업병 확진 의뢰 등의 조치결과 보고의무 신설(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)
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4항-5항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10조,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20조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0호)

Q&A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,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

www.sngwhc.or.kr
 서울성동분소 · 서울서부 · 근로자건강센터 · 서울성동분소

사업장 건강진단 사후관리

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서부 · 서울성동분소



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

사업장명: OO 공업사

공정	성명	성별	나이	근속 연수	유해 인자	건강 구분	사후관리 소견
일반 정비	이건강	M	31	4년	진동 톨루 엔 스티 렌	D2	근무 중 치료 추적관찰 (6개월후)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
일반 정비	김센터	M	28	2년	진동 톨루 엔 스티 렌 아세트		필요없음

A, C₁, D₂ 학점인가..??
사후관리가 뭐죠?



근로자건강센터의 직업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.

1



전문의 건강상담

직업환경의학 전문의
건강 관련 종합 상담

2



혈액검사

5분 이내 결과 확인
혈당, 콜레스테롤, 간기능

3



보호구 착용 교육

귀마개, 마스크, 보안경 등
보호구 밀착도 검사 가능

4



통증 예방 · 관리

목, 허리, 어깨 등 통증 관리
통증 예방 스트레칭 교육

5



스트레스 관리

직무스트레스 관련
개인 및 집단 상담

이용자
혜택

- 모든 상담 서비스 **전액 무료**
- 사후관리상담 참여확인서 발급

- 전문인력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
-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**무료** 지원



근로자건강센터는 어떤 곳인가요?

고용노동부

안전보건공단

근로자건강센터



지원대상

50인 미만
소규모사업장 근로자
건강관리 집중지원



상담내용

건강 상담, 생활습관 개선
(금연·절주), 체중관리 및
체형교정, 작업환경 컨설팅,
심리상담, 산재 상담



인력구성

직업환경의학 전문의,
산업간호사, 운동처방사,
물리치료사, 상담심리사,
산업위생관리기사



자세한 내용은
전화로 문의 주세요.

- 서울 서부 02-2093-2650
- 서울성동분소 02-6077-7500